

조문별 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「소방청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

◇ 개정 이유

소방청 청렴도 향상과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의 자격 및 직무를 확대하는 등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- 가. 청렴시민감사관 자격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등록된 자로써 3년이상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를 포함(제2조 3항)
- 나.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에 소방청 및 소속기관 직원 대상 청렴·반부패 교육을 포함(제4조 1항)

◇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